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5. 7. 4.	
건축종별	[√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최현준(주안동 32-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				
	지번	32-2 외 30필지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7,376.3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, 철도보호지구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,633.64 m²	건폐율	22.15 %	층수 지하 : 지하2층/ 지상20층
	주용도:	공동주택	구조: 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	2동
	최고높이	57 m	용적률	249.58 %	연면적 합계 28,180.97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 조)분야	○ SD 600 철근 관련 강도를 하나로 정리할 것 ○ 깊은 보 관련 설계근거 재보완 할 것 ○ 슬래브 단부 검토시 Pin-Fix로 재검토할 것 ○ 정적토압과 동적토압의 조합을 고려하여 지하외벽 검토할 것 ○ 지하주차장은 내구성 설계기준을 적용해서 콘크리트 강도 재검토 할 것 ○ 흙막이 버팀보 해체에 따른 지하외벽 구조를 추가 검토할 것 ○ 지하주차장의 슬라브 및 골조에 대한 콘크리트 적정 강도 재검토 및 반영할 것			
심의결과	[] 원안 의결 [√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

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‘○’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미추홀구청 건축과		심의일자	2025. 7. 4.	
건축종별	[√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최현준(주안동 32-2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)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				
	지번	384-14 외 26필지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405,944.8 m²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1종일반주거지역, 일반미관지구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3,237.95 m²	건폐율	0.8 %	층수 지하 : 지하1층/ 지상15층
	주용도: 교육연구시설(기숙사)		구조: 철근콘크리트조	건축물 동수	1동
	최고높이	47 m	용적률	7.32 %	연면적 합계 32,665.81 m²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			
	(구 조)분야	○ 발주처에서 구조분야 도서 검토와 관련하여 현행 법에 맞추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 ○ 어스앵커나 버팀보 해체시기에 요구되는 콘크리트(건축) 벽체나 슬래브 강도를 표준시방서 또는 서울시 굴토심의 매뉴얼을 참조하여 도면에 명기할 것(굴착 및 해체 시공 순서도에 표기)			
심의결과	[√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킴으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